



# 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(농식품부 예규) 개정수요 조사

1. 관련 : 「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7조(피해의 정밀조사·보고)
2. 우리부는 농업재해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관련 최근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(농식품부 예규)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니 2018. 12.10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
끝.

##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식량산업과장, 간척지농업과장, 원예경영과장, 원예산업과장, 축산경영과장, 농촌진흥청장(재해대응과장), 산림청장(산사태방지과장), 산림청장(사유림경영소득과장), 서울특별시(도시농업과장), 부산광역시(농축산유통과장), 대구광역시(농산유통과장), 인천광역시(농축산유통과장), 대전광역시(농생명산업과장), 광주광역시(생명농업과장), 울산광역시(농축산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농업축산과장), 경기도지사(친환경농업과), 강원도지사(친환경농업과장), 충청북도지사(유기농산과장), 충청남도지사(친환경농산과장), 전라북도지사(친환경유통과장), 전라남도지사(친환경농업과장), 경상북도지사(친환경농업과장), 경상남도지사(친환경농업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친환경농업정책과장), 한국농어촌공사사장, 농협중앙회장(농가소득지원부장)

주무관 **안준영**      기술서기관 **강승규**      재해보험정책과장 **문석호**      전결 2018. 11. 26.

협조자

시행 재해보험정책과-3702      접수 사유림경영소득과-4886      (2018.11.26.)

우 30064     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(어진동)      /www.mafra.go.kr

전화번호 044-201-1795      팩스번호 044-868-7253      / junyoung.ahn@korea.kr      /      대국민 공개